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50호
2024. 2. 5.(월)



목 차

◆ 공 고

제2024-323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2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4-323호

서울특별시의회 제출안건 추가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5일
서울특별시장

구분	연번	제출 안건명	실·본부·국
동의안(1건)	1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년 월 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위임 및 위탁)에 근거 민간위탁 추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 중인 사업으로서,
- 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재위탁)

2. 주요내용

가. 사업 목적 및 목표

○ 사업 목적

- 만성질환예방·관리에 대한 지속적 대시민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고혈압·당뇨병 건강관리 활성화로 환자 자기관리능력 향상
- 보건소사업 기술지원, 담당인력 교육 등 만성질환 관리수준 향상 도모

○ 사업 목표

목표	평가지표 (%)	2022년	2024년	자료원
		· 장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합병증 감소 - 뇌졸중(중풍) 조기증상 인지율 증가(표준화율) -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 증가(표준화율)	(서울) 54.0%	
· 중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관리수준 향상 - 고혈압 약물치료율(≥30) 증가(표준화율) - 당뇨병 치료율(≥30) 증가(표준화율)	(서울) 90.5%	(서울) 91.0%	2022 지역사회 건강통계	

- 장기목표: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 예방
 - 서울시민 중 고혈압·당뇨병 유병자의 합병증 예방
- 중기목표: 고혈압·당뇨병 관리수준 향상(치료율, 조절률, 교육이수률 등)

- 고혈압·당뇨병 지속치료 향상 및 건강형태 개선
- 서울시민 중 고혈압·당뇨병 유병자의 자기건강관리 능력 강화
- 단기목표: 고혈압·당뇨병의 인식을 증가
 -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 및 인식도 향상을 통한 시민 참여 유도
 - 고혈압·당뇨병 표준교육 질 향상을 위한 서울시 전문강사 역량 강화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2년 8개월 (2024.5.~2026.12.31.)
- 위탁업무
 - 고혈압 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강화
 - 자치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질 강화지원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인식수준 개선 홍보
 -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
 -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사업 지원등
- 소요예산 : 69백만원
 - 현위탁기관 17백만원(' 24.1.~' 24.3.)
 - 재위탁기관 52백만원(' 24.5.~' 24.1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 민간위탁 추진현황

일자	연혁
2008.8.1	민간위탁1차 협약(2008.8.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09.4.1.	민간위탁2차 협약(2009.4.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0.7.1.	민간위탁3차 협약(2010.7.1. ~ 12.31.), 강북 삼성 병원(1년)
2011.7.27.	민간위탁4차 협약 (2011.7.27.~ 2013.2.10.),강북 삼성 병원(2년)
2013.6.1.	민간위탁운영 5차 협약 (2013.6.1.~2014.12.31.)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2년)
2015.5.1.	민간위탁운영 6차 협약(2015.5.1.~ 018.4.30.),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18.5.1.	민간위탁운영 7차 협약(2018.5.1.~2020.12.31.),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21.1.11.	민간위탁운영 8차 협약(2021.1.11.~2023.12.3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2023.11.20.	민간위탁 운영 협약 연장(2021.1.11.~2024.3.30.),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3년)

라. 민간위탁(재위탁) 필요성

-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의 주요 위탁사무는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개선 홍보사업, 고혈압·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구축,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서비스 질 강화, 건강관리마일리지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민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를 맡기고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공개모집·선정을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23조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로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민간위탁 사전이행 절차
 - 2023.5. : 민간위탁추진 계획 수립(재위탁)
 - 2023.7.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2023년 제4차)
 - 향후계획
 - 2024.2. : 시의회 동의
 - 2024.3.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팀 조유희 (☎ 2133-7758)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